

부산지방법원 2022. 4. 28 선고 2021나46438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1. A

2. B

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웅

피고, 항소인 C

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득열, 고민삼

변 론 종 결 2022. 3. 31.

판 결 선 고 2022. 4. 28.

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. 2. 24. 선고 2020가단8427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.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8, 19, 20, 21,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‘가’ 부분 26㎡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라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주문 제3항과 같다(원고들은 제1심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3 도면 표시 (ㄹ) 부분 73㎡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 인도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다가, 이 법원에서 측량감정결과에 따라 철거청구와 토지인도청구 부분의 청구취지를 감축하고,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취하하였다)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 A은 2018. 5. 17.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 한다) 1/2 지분에 관하여 2018. 5. 17. 접수 제22480호로, 원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1/2 지분에 관하여 2018. 5. 17. 접수 제22481호로 각 2018. 4. 9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피고는 부산 F 73㎡ 건물(이하 ‘피고의 건물’이라고 한다)을 소유하고 있다. 다. 피고의 건물 중 일부인 건물(이하 ‘이 사건 계쟁 건물’이라고 한다)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8, 19, 20, 21,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‘가’ 부분 26㎡를 점유하고 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중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계쟁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권원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계쟁 건물을 철거하고,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8, 19, 20, 21,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‘가’ 부분 26㎡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감축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

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. 한편,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원고들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이 판결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.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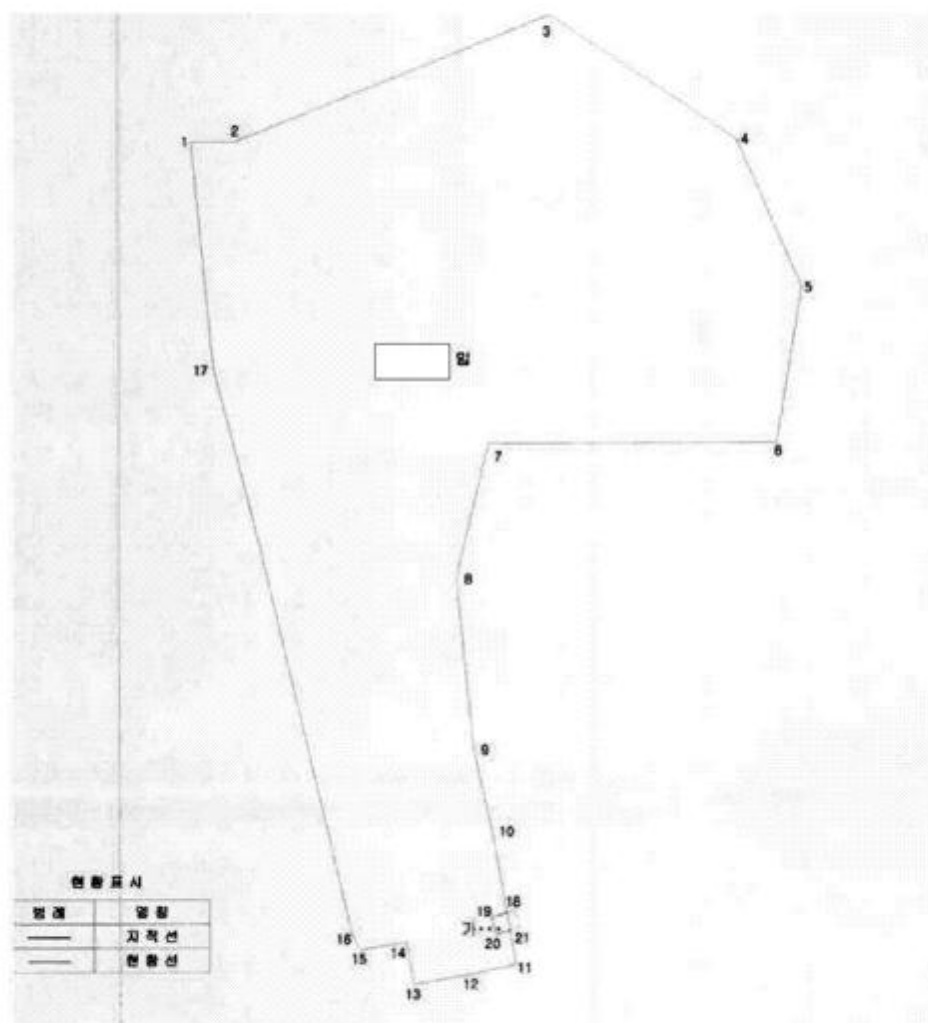
재판장 판사 장병준, 판사 안혜미, 판사 허성민

별지 1

부산 남구 D 입야 2276㎡, 끝.

별지 2

도면



별지 3

도면

